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우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48

발의연월일: 2012. 12. 7.

발 의 자: 김우남 · 이윤석 · 김세연

강기정 • 백재현 • 김성곤

김동철 · 안민석 · 이낙연

유성엽 · 김영록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생활안정지원금 등 생활안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 이에 따라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소하여생활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국가로부터 그 설치·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신설).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의 기준 및 인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로 본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따른 기준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일본군위안부 피해자
	보호시설) ① 국가나 지방자치
	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	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
	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	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
	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
	<u>리법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</u>
	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
	운영할 수 있다.
	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
	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
	<u>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개선·</u>
	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
	<u>할 수 있다.</u>
	④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의 기
	준 및 인가기준 등에 필요한
	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
	<u>다.</u>

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□ 개정안 제5조의2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측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의안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3호 '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'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안 제5조의2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현재의 시점에서 설치·운영되는 보호시설의 규모,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·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워 그에 따른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.

4. 작성자

□ 김우남 의원실 김병찬 보좌관(02-788-2754)